

비씨카드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비씨카드(주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2022. 3. 30.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비씨카드(주)

2.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범위

○ (금융서비스 종류) 여신전문

○ (주요 내용) 금융거래계좌 없이 개인이 보유한 포인트(선불전자지급수단)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,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*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

*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거래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충전 가능

3.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

○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개인 고객

4.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
○ 개인이 신청인의 회원이 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(포인트)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신청인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의 잔액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

6. 부가조건

- **(업무 제휴 범위)** 혁신서비스 지정에 따라 출시하는 체크카드는 페이북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되, 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여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부가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체크카드 출시 및 운영이 가능하나 제휴사는 최대 3개사로 제한
- **(신용카드 충전분에 대한 이용 제한)** 신용카드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(타인이 신용카드로 충전하여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)은 체크카드 결제시 이용할 수 없으며, 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페이북머니 등 체크카드와 연결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한
- **(제휴 업무 운영방안 마련)** 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 해당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범위, 이용대상,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명확히 할 것
- **(미성년자 본인확인 강화)** 미성년자에 대해 휴대폰 본인인증 외 추가적인 인증절차 보완수단을 마련할 것
- **(발급좌수 관리)** 발급좌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이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할 것
 - ※ 지정기간 동안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체크카드의 총 발급좌수를 과거 연평균 신규 발급된 체크카드 좌수(자체·회원사 합산)의 일정 비율 이내 관리하여야 함

7. 지정일 : 2022. 3. 30.

8. 지정기간 :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